

의안번호	2203346
의 퇴 인	황운하의원
회 답 일	2024.10.22.
추계번호	24D3283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이라 함)을 둔 - 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함)을 두고, 필요한 경우 지방수사청 소속으로 지청을 둘 수 있음 - 지방수사청과 지청의 경우 인구의 수, 교통, 지리적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2개의 지방수사청을 두거나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1개의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음	의무·재량 규정
2	안 제6조(수사청장)	수사청에 수사청장을 두며, 수사청장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함	의무규정
3	안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수사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4	안 제8조(차장)	수사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함	의무규정
5	안 제9조(하부조직)	- 수사청의 하부조직은 국·부 또는 과로 함 - 수사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중대범죄 등의 수사부서는 부패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를 포괄하는 수사 부서, 경제범죄·방위사업범죄를 수사부서, 마약범죄·대형참사를 포괄하는 수사부서로 나누며, 수사부서의 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수사본부장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함	의무규정
6	안 제11조(수사연구관)	수사청에 수사청 사무에 관한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2조(지방수사청장) 및 제13조(직제)	지방수사청에 지방수사청장을 두고, 지방수사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 및 하부조직,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8	안 제14조(수사관의 직급 등) 및 제15조(수사관의 자격)	- 수사관의 직급은 수사1급부터 수사 7급까지로 함 -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함	의무규정
9	안 제16조(인사)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	의무규정

	위원회)	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둠	
10	안 제22조(보수 등)	- 수사청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하고,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함 - 수사관 중 수사1급, 수사2급 이상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의 예에 준함 - 수사관 중 수사3급부터 수사7급까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7급까지의公安직공무원의 예에 준함 - 수사관이 아닌 수사공무원인 수사8급부터 수사9급까지의 보수와 대우는 8급부터 9급까지의公安직공무원의 예에 준함	의무규정
11	안 제28조(수사 공무원의 정원) 및 제29조(그 밖의 직원)	- 수사공무원의 정원은 수사청 및 각 지방수사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 - 수사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11	안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 제29조(그 밖의 직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 및 지청 설치·운영(안 제3조부터 제29조까지)

- 제정안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 및 지청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및 청사마련비 등이 발생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수사청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 및 지청의 규모 및 정원 등에 대한 예측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수사청 설립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청장·차장 및 수사관의 1인당 직급별 보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청장·차장·수사관 및 공무원의 1인당 직급별 보수(2024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가족수당	
청장(차관급)	141,611	11,400	1,680	480	155,171
차장(고위공무원단 최고직위)	130,952	9,000	1,680	480	142,112
수사관 1급(고위공무원단)	87,492	9,000	1,680	480	98,629
수사관 2급(고위공무원단)	78,886	7,800	1,680	480	88,847
수사관 3급(공안직공무원 3급)	75,734	6,000	1,680	480	83,894
수사관 4급(공안직공무원 4급)	67,236	4,800	1,680	480	74,196
수사관 5급(공안직공무원 5급)	58,021	3,000	1,680	480	63,181
수사관 6급(공안직공무원 6급)	49,673	2,220	1,680	480	54,052
수사관 7급(공안직공무원 7급)	42,136	2,160	1,680	480	46,455
수사관이 아닌 수사공무원 8급 (공안직공무원 8급)	34,890	2,100	1,680	480	39,150
수사관이 아닌 수사공무원 9급 (공안직공무원 9급)	29,701	2,100	1,680	480	33,961

주: 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2. 1~4급 20호봉, 5~6급 18호봉, 7급 15호봉, 8급 12호봉, 9급 10호봉 기준(성과급 지급 시 적용되는 호봉 기준)
자료: 2024년도 법무부 예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